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97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0. 15. / 한근수 의원 등 5명
-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범죄취약지역 선정 시 경찰서의 지정 구역을 반영하고, 안심귀가 조성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경찰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범죄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전시설물” 재정의(안 제2조)
- 취약지역 선정 기준 추가(안 제4조)
 - ‘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추가
- 안전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및 협조체계 구축(안 제5조제1항)
 -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으로 범위 확대
- 경찰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심귀가를 위해 경찰서 지정 구역을 반영하여 범죄취약지역 관리의 객관성을 높이고, 남양주시와 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최근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경찰서가 보유한 범죄 취약지 관련 데이터와 전문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판단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와 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 범죄 사전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안전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수요를 고려하여 단계적, 선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98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0. 15. / 정현미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제6조)
- 교육·훈련 및 점검 등을 규정(안 제7조~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으로써,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등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주체로 하여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주체가 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재난에 대해 시민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기적절한 안전이라 사료되며, 그 외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99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0. 15. / 정현미 의원 등 6명
-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웰니스 관광사업, 지원을 규정(안 제5조~제7조)
-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8조~제9조)
 - (개정) 동일 학기에 타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 지급
-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시기 조정(안 제4조, 제7조)
 - (현행)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
 - (개정) 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 ⇒ 타 장학금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강화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웰니스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사회적 고립감에 우울감을 겪은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관광에서도 건강과 행복의 가치를 중시하는 웰니스 관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웰니스 관광은 관광에서 비교적 생소한 분야로 웰니스 관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웰니스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데, 웰니스는 ‘웰빙’과 ‘건강’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에 걸쳐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웰니스 관광은 스파와 휴양, 미용, 건강 관리 등을 여행 중에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뜻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 전국 88개소를 선정하였고, 경기도는 2025년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남양주시 모란미술관과 물맑음수목원을 포함하여 15곳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인증을 받은 웰니스 관광지는 국내외 홍보와 관광 상품화 지원, 맞춤형 개별 컨설팅, 운영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웰니스 용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정부 및 경기도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중앙-지방 정책 연계 및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웰니스 관광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맞춰 개정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의 안 번 호	809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기도, 시청자 미디어재단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2018. 10. 24.)
-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6 회계연도 남양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남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개요

- 위 치 :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46
- 규 모 : 지상 1~3층/지하1층 (연면적 4,222㎡ , 건축면적 934.11㎡)

- 운영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기관)
- 주요시설 : 디지털미디어교육실, 드론촬영체험관, 편집실, 사무실 등
- 주요사업
 - 미디어 활용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대관·대여 지원, TV 및 라디오 제작단 운영
 - 미디어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 온라인 미디어사업 지원 : 학교 및 기관 원격수업 지원, 온라인 교육·비대면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2) 2026년 출연 계획

- 출연 대상 : 시청자미디어재단
- 출연 금액 : 478,032천원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라 센터 운영비 중 60%는 방통위, 40%는 남양주시가 각각 부담
 - 2026년 센터 운영비 1,537,630천원의 40%인 615,052천원을 시에서 부담
 - 시 부담금 615,052천원 중 파견인력 2명 인건비(137,020천원)를 제외한 금액

《 2026년 센터 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인건비 (A)	경상비 (B)	운영비 (A+B)	비 고
총 소요액	890,630	647,000	1,537,630	
국비 부담	685,100	237,478	922,578	운영비의 60%
지자체 부담	205,530	409,522	<u>615,052</u>	운영비의 40%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출연안은 2018년에 체결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라 동 센터의 2026년도에 소요되는 운영비 분담금 478,032천원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약 당시 운영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우리 시가 40%를 각각 분담할 것을 약정하였고, 우리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2명의 차년도 인건비 약 1억 3천여만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리 시가 지급하기에 이를 제외한 출연금의 규모는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의 역할을 감안할 때 운영비 출연은 타당하다 볼 수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광역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의 분담금 중 큰 비율을 우리시에서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바, 향후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분담금을 조정해 나가려는 시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10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존 ‘남양주시 옴부즈만’ 을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도의 표준화 및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기존)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구성 의미 재정립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의(안 제2조의2) 및 불필요한 정의규정 정비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방법 명확화(안 제4조)
-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12조)
 - 추천위원회 인원을 10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위촉된 ‘옴부즈만’ 명칭이 다소 추상적이고 낯선 용어로 인식되어 시민들이 익숙하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비롯하여 ‘옴부즈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회’, ‘위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용어의 명확성을 높이고, 가부동수가 나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원 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표현, 부자연스러운 문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시민이 제도인식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810-1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정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용어를 통일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의 ‘유관기관 옴부즈만’ 용어도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주요골자

가. 제34조의 제목 “(유관기관 옴부즈만과의 관계)”를 “(유관기관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유관기관 옴부즈만”을 각각 “유관기관”으로 한다.

나.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ombudsman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양주시 ombudsman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유관기관 ombudsman과의 관계)”를 “(유관기관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유관기관 ombudsman”을 각각 “유관기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원안(개정안)	수정안
제34조(국가옴부즈만과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옴부즈만과 국가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u>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u>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유관기관 옴부즈만과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와 <u>유관기관 옴부즈만</u> 은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유관기관과의 관계) ① ----- ----- ----- <u>유관기관</u> ----- ----- ----- ----- -----.
② <u>옴부즈만</u> 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 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u>국가 옴부즈만의 협력</u>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u>국가옴부즈만의 조력</u> 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 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u>유관기관 옴부즈만</u> 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 ----- ----- ----- ----- <u>유관기관</u> ----- ----- ----- -----.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11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리·통·반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리·통 : 666개→668개(증 2개) / 반 : 5,726개→5,746개(증 20개)

읍면동	조 정 전		조 정 후		증 감	
	리·통	반	리·통	반	리·통	반
계	666	5,726	668	5,746	+2	+20
와부읍	50	584	52	602	+2	+18
오남읍	49	499	49	501	-	+2
기 타	567	4,643	567	4,643	-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리·통·반 행정 구역을 일부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동주택 신축 및 도로개설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 과도한 세대수 분리 및 자연부락 내 실제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와부읍과 오남읍의 2개 통·리와 20개 반을 조정·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편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12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 현안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4급 기구 및 소관사무 조정

(안 제4조, 제6조 ~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19조)

- 신설 : 행정국, 도서관사업소

○ 5급 기구 및 소관사무 조정(안 제5조 ~ 제7조의2)

- 신설 : 스마트도시과, 자치협력과, 다산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2과
- 소속이관
 - 민원담당관(보좌기관 → 행정국)
 - 행정지원과(기획조정실 → 행정국)

- 회계과, 재산관리과(재정경제국 → 행정국)
- 청년정책과(문화교육국 → 보좌기관)
-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문화교육국 → 도서관사업소)
- 명칭변경 · 기능조정
 - 민원담당관(→민원여권과), 일자리정책과(→일자리지원과)
 - 보육정책과(→보육과), 청년정책과(→청년담당관)
 - 문화관광과(→관광유산과), 도서관정책과(→정약용도서관과)
 - 도서관운영과(→도서관운영1과)
- 도서관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재지 및 관할구역 설정(안 별표1)
- 진건보건지소, 퇴계원보건지소, 수동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국 · 도서관사업소 신설 및 시정 현안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 ·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2024년 4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장급 기구설치가 자율화 되었습니다.

과대한 실 · 국별 통솔범위 적정화 필요성에 따른 행정국 및 도서관사업소 신설과 문화교육국 과 조정 및 도서관운영과 분리는 그에 따른 조치라 사료됩니다.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본청 실국 수를 검토해 볼 때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본청내 현장 기능의 사업소 이관을 통한 본청 정책 역량 강화 및 업무효율이 기대되며 기타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道 내 50만 이상 대도시 본청 실·국 수(평균) : 10개 (남양주 : 8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11	15	10	10	13	11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13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 현안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정원 변동사항 : 2,406명 → 2,427명(+21명)
 - 1) 집행기관 : 2,367명 → 2,387명(+20명)
 - 2) 의회사무기구 : 39명 → 40명(+1명)
 - 직급별 정원 변동사항
 - 1) 일반직 4급 : 21명 → 23명(+2명)
 - 2) 일반직 5급 : 104명 → 108명(+4명)
 - 2) 일반직 6급 이하 : 2,231명 → 2,246명(+15명)
 - 인건비 비용 추계액(연간) : 약 1,536백만원
- ※ 1년간 인건비 소요액 기준임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 현안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써

정원 운영의 효율성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 조정 등에 따라 현재 정원 2,406명에서 2,427명으로 20명의 집행기관의 정원과 1명의 회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현행 정원의 일반직 4급 2명, 5급 4명, 6급 이하 15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26년도 소요액은 15억3천6백만원이 발생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

의 안 번 호	814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1)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 남양주시정연구원
- 출연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출연금액 : 금2,528,057,000원(금이십오억이천팔백오만칠천원)
- 출연내용 : 남양주시정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등 교부

1)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출 연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증 감	비 고
계	2,091,474	2,528,057	436,583	• 2025년 대비 20.8% 증액
인 건 비	1,122,673	1,266,103	143,430	• 인력 운영을 위한 보수, 제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일반운영비	548,751	609,359	60,608	• 운영 전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연구사업비	400,050	627,380	227,330	• 연구 수행 및 교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예 비 비	20,000	25,215	5,215	• 관련 규정에 따라 총예산 1% 이내 편성

○ 주요 증액 사유

- 인 건 비 : 인력 확대(9명→15명) 계획 및 호봉제 인건비 인상을 3% 반영
- 일반운영비 :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반영
- 연구사업비 : 연구 과제 확대 및 교육 훈련 등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증액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정연구원에 2026년 총 25억2,805만여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6년 출연금 세부 내역은 인력운영비 12억 6,610만원, 일반운영비 6억 935만원, 연구사업운영비 6억 2,738만원 등으로 2025년 총액 대비 약 20.8%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 7월 개원에 이어 본격 연구 체제로 가동될 차년도 시정연구원의 인력 확충, 연구과제 확대를 대비한 연구사업비 증액이 주된 요인으로, 출연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남양주시의 다양한 정책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과제 개발과 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815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나눔세무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폭넓은 대면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적인 세법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복지 환경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나눔세무사 운영 취지 (안 제1조~제2조)
- 나눔세무사 역할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세무상담 대상·방법 및 상담실적 관리 (안 제6조~제8조)
- 나눔세무사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비밀유지 의무 (안 제9조~제10조)
- 나눔세무사 활동에 대한 수당 및 포상 (안 제11조~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나눔세무사를 위촉·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체적으로는 세무사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부 통로를 공식화하고, 남양주시민 및 남양주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특히 영세 납세자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 세무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의 타당성이 높다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 안 번 호	816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6년 출연금 : 800백만원
- 사 업 명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 사업목적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으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운전 자금, 창업·경쟁력 자금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 출연금 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 출연기관 : 경기도
- 출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1982~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7,125	3,842	238	294	826	1,088	837

○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실적	1,728	101,842	1,089	87,717	1,081	76,633	913	64,931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6도 출연금 규모는 금년 대비 37백만원 감액된 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난해에는 913개 기업에 약 64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기금 출연의 사업목적이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의 안 번 호	817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6년 출연금 : 800백만원
- 사 업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중소기업 특례보증)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금융자금 특례 보증 지원을 통한 융자실행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출연금 개요
 -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기업형 비제조업 등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추천
- 출연기관 : (재)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 계	2000-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9,820	6,420	600	700	700	700	700

○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중소기업	32	4,827	33	5,188	44	6,627	37	8,117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출연금 규모는 8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4배수에 해당하는 보증 한도를 조성하여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37개 업체가 약 81억 원의 보증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의 안 번 호	818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6년 출연금 : 2,100백만원
- 사 업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특례보증)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으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출연금 개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청년인증기업,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소상공인 당 최대 5천만원 용자 특례보증 지원

○ 출연기관 : (재)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 계	2015-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11,700	2,100	1,500	2,000	2,000	2,000	2,100

○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소상공인	603	15,486	759	21,625	746	19,725	847	20,931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21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청년인증기업 또는 창업기업인 소상공인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에 적용되던 신용등급 3등급 이하 제한을 폐지하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더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 음

심 사 보 고 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

의 안 번 호	819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	시민안전관
·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	-----	미래교육과

나. 주요내용

(1)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가) 사업개요

- 위 치: 호평동 544-10(임)번지 외 6필지

(체험관) 호평동 544-10(임)번지 외 2필지 [544-11(임), 544-59(임)]

(진입도로) 호평동 544-74(임)번지 외 3필지 [544-57(임), 542-20(철), 호평동 545-8(전)]

○ 사업규모: 부지면적 6,526㎡

(체험관) 연면적 2,500㎡ / 부지면적 5,526㎡ / 지하1층 ~ 지상2층

(진입도로) 진입도로면적 1,000㎡ (L = 97m / B = 10m)

○ 사업기간: 2026. 1. ~ 2028. 12.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부지매입비 ※ 가감정 예정가격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 설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기타 ※ 도시공사 대행수수료 (공사비의 6.0%)
총사업비	27,165	3,100	19,226	3,685	1,154
체험관	25,343	2,500	18,270	3,477	1,096
진입도로	1,822	600	956	208	58

○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시비	27,165	3,180	2,574	21,411

○ 층별 계획(안)

층별	연면적	용도	비고
지상 2층	750㎡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지상 1층	750㎡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강당, 사무실 등	
지하 1층	1,000㎡	주차장, 기계실, 공용공간 등	
합계	2,500㎡	문화 및 집회시설	

○ 토지현황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본번	부번					
합계					12,180	6,526		
1	호평동	544	10	임	718	718	남양주도시공사	건립
2	호평동	544	11	임	301	301	남양주도시공사	건립
3	호평동	544	59	임	4,507	4,507	남양주도시공사	건립
4	호평동	544	74	임	6,368	756	사유지	진입도로
5	호평동	544	57	임	82	40	사유지	진입도로
6	호평동	542	20	철	144	144	남양주시	진입도로
7	호평동	545	8	전	60	60	남양주시	진입도로

(2)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

가) 사업개요

- 목 적: 덕소초 유희부지 내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
- 위 치: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31-1(경기도교육감 소유)
- 사업규모: 연면적 3,000㎡(지하 1층 ~ 지상 4층)
- 사업기간: 2025. 1. ~ 2028. 2.
- 소요예산

(단위:천원)

계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설계, 감리)	기타
13,594,540	-	11,559,000	1,828,634	206,906

○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3,594,540	22,000	700,000	12,872,540
국 비	4,757,000	-	-	4,757,000
도 비	-	-	-	-
시 비	8,837,540	22,000	700,000	8,115,540

○ 층별 계획(안)

층 별	연 면 적(㎡)	용 도	비 고
합 계	3,000		
지상 4층	600	소규모 공연장	교육연구시설
지상 3층	600	커뮤니티실, 다목적실	
지상 2층	600	청소년 전용공간	수련시설
지상 1층	600	돌봄교실, 전시실 등	교육연구시설
지하 1층	600	부설 주차장	12면 이상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1)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 먼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건은 호평동 544-10(임)번지 외 6필지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을 건립·운영하여 경기동북부 안전체험수요 충족 및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건축규모는 연면적 2,500㎡에 지하1층, 지상2층 계획되었으며 사업비는 약271억6500만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월 타시군소재 안전체험관 우수사례를 반영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7년 3월 착공하여 29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 어린이 교통사고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안전체험관 설치에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립 이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방안 및 장기적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

- 다음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입니다. 와부읍 지역 내 청소년 전용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돌봄·교육·문화 기능이 융합된 학교 복합시설을 덕소초등학교에 조성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에 와부읍 덕소초등학교 복합문화센터를 신청 및 선정되어 계획중이며, 위치는 와부읍 덕소리 431-1 덕소초등학교 부지로, 연면적 3,000㎡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청소년 전용 공간, 소규모 공연장, 전시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해당 부지는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어 공간 활용 및 연계 운영이 가능하며, 지역 내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 안 번 호	820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2026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남양주시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금액 : 48,115천원
 - 산출근거 : 전전년도(‘24년) 보통세(시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
 - 산출내역 : 481,146,462천원 x (1.0 / 10,000) = 48,115천원

○ 사 업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사업목적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

* 한국지방세연구원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2011년 설립

- 자치단체 요청 연구과제 수행, 시가표준액 조사 및 연구, 지방세 전문교육, 불복 사건 자문 등 소송사무 지원, 지방세 법령정보 DB 구축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52,495	47,469	50,579	57,364	64,938	59,032
비 율	15 / 10,000	13 / 10,000	12 / 10,000	12 / 10,000	12 / 10,000	12 / 10,000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 및 지방 세제·세정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과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출연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6년도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48,115천원으로, `25년 12월 출연비율이 1만분의 1.0으로 개정 예정임에 따라 전년도 대비 출연금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본 출연안은 법적 의무에 따른 경비로써, 검토결과 출연의 목적과 출연 금액의 산정근거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의 안 번 호	821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남양주문화재단
- 출연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출연금액 : 금4,271,462,000원
- 출연내용: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교부

[출 연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증 감	비 고
계	977,000	4,271,462	3,294,462	
기본재산	500,000	0	△500,000	
재단운영비	477,000	1,565,406	1,088,406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
사업비	0	2,706,056	2,706,056	이관사업 및 신규사업비

○ 주요 증감 사유

- 인건비 : 재단 운영기간 6개월→12개월, 신규직원채용(현원12명→21명)
- 사업비 : 시 이관사업 및 재단 신규사업

○ 설립 개요

- 재 단 명 : 남양주문화재단
- 설립허가 : 2025. 7. 25.
- 소 재 지 : 남양주시 석실로 724, 4층
- 조 직 : (임직원) 3팀(경영기획팀, 공연전시팀, 생활문화팀) /
21명(대표 1, 팀장 3, 직원 17)
(이사회) 총 11명[이사9명(대표이사1, 당연직3 포함), 감사2명]
- 주요사업
 - (문화재단 운영) 경영, 공연전시기획 및 생활문화지원
 - (이관사업) 문화의 집 등 문화예술시설의 수탁·운영관리 및
지역문화 예술단체 및 예술인 활동 지원 등
 - (신규사업) 관내 민간 생활문화공간 발굴 및 취약계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타 기관 연계 공연 전시, 후원회 구성을
통한 재원 마련 등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출연안은 2026년도 남양주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대상인 남양주문화재단은 2025년도 출연을 통해 설립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市) 문화예술시설의 수탁·운영관리 등의 이관사업과 관내 민간 생활문화공간 발굴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남양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출연안은 출연의 절차에 관한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남양주문화재단의 운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남양주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그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지방재정법」상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은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사전에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의 확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본 안건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사항이며, 제출된 출연금 (4,271,462천원)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안 심의 시 운영비 편성의 적정성,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문화의집 · 다산아트홀 · 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822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운영 중인 남양주시 문화의집, 다산아트홀, 북한강야외공연장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위하여 남양주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시설관리
- 위탁사무 내용
 - 위탁시설 및 물품의 유지·관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남양주시 문화의 집	다산아트홀	북한강 야외공연장
소재지	진접읍 금강로 1509-26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화도읍 북한강로 1554
시설 규모	건물면적 : 약 378㎡ 주요시설 : 사무실, 동아리방, 교육실 등	건물면적 : 약 2,438.58㎡ 주요시설 :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 등	부지 5,545㎡ 연면적 492㎡ 주요시설 : 공연무대, 야외화장실, 관리동
위치도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 (5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문화의 집

(단위: 천 원)

구분	2025년 (시예산)	2026년 (출연금)	증감	증감사유
계	224,150	227,916	3,766	
인건비	112,414	115,257	2,843	○ 기간제(3명) - 2026년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기준에 따른 생활 임금 인상
운영비	34,200	35,123	923	○ 공공요금 및 제세, 비품임차료, 소모품구입 등 ○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2.7%반영
프로그램비	77,536	77,536	-	

- 다산아트홀

(단위: 천 원)

구분	2025년 (시예산)	2026년 (출연금)	증감	증감사유
계	815,340	954,450	139,110	
인건비	28,630	153,676	125,046	○ 기간제 1명 → 4명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적용에 따른 인력 보강
일반운영비	709,380	728,534	19,154	○ 사무관리비 180,609천원(일반수용비 등) ○ 공공운영비 106,315천원(각종 공공요금 등) ○ 행사운영비 441,610천원(기획 공연 운영) ○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2.7%반영
일반보전금	72,240	72,240	-	○ 행사실비보상금 2,880천원(시민배우활동비) ○ 기타보상금 69,360천원 (공연장 운영요원 및 무대기술 보조인력)
자산취득비	5,090	-	△5,090	

- 북한강 야외공연장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시예산)	2026년 (출연금)	증감	증감사유
계	82,000	214,986	132,986	
인건비	-	31,852	31,852	○ 기간제 1명 - 2025년 청원경찰배치→기간제 대체
일반운영비	42,000	143,134	101,134	○ 사무관리비 9,243천원(일반수용비, 경비용역 등) ○ 공공운영비 33,891천원(공공요금 등) ○ 행사운영비 100,000천원 (신설, 공연행사비) ○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2.7%반영
시설비 및 부대비	40,000	40,000	-	○ 잔디관리 및 시설정비 등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문화재단은 공연장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 무대기술 등 전문적인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시에서 출연한 재단의 고유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성 및 전문성 확보가 가능함. ○ 또한, 담당 인력의 주기적인 인사이동이 있는 시 직영의 경우와 비교할 때 민간 위탁은 시설이용자와의 탄탄한 유대관계 형성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함.
경제적 효율성	○ 관련 분야의 민간 네트워크 활용 및 공모사업 등 주요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함.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관련 분야의 현장경험 및 축적된 전문자원 활용이 가능한 재단에 시설을 위탁함으로써 보다 기술적인 관리가 가능함.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은 매년 위탁시설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상 목표 및 일정에 맞춰 사업을 수행하므로 성과 측정이 용이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시설 관리 실태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사 등을 실시하고, 위탁 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함.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변화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사업 기획 및 활동의 유연성이 높은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에 유리함.
총 합 의 건	○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 운영 역량을 갖춘 남양주문화재단에 해당 시설을 위탁함이 타당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동의안은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남양주시 문화의집’, ‘다산아트홀’, ‘북한강야외공연장’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해 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의 제출 취지와 법령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위탁동의안은 그동안 시(市) 관련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던 시설을 2025년에 설립된 남양주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남양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의 안 번 호	823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2019.1.22.)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25,000천원

- 특례보증규모 : 500,000천원

⇒ 산출근거 : [25,000천원(시 50%) + 25,000천원(도 50%)] × 10배* = 500,000천원

(10배*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도와 시·군 출연액의 10배까지 보증)

○ 출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출 연 현 황								비고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특례보증규모 (출연금 총액의 10배)	2,000,000	1,000,000	-	-	-	500,000	-	500,000	先 출연 後 지원
출연금 총액	200,000	100,000	-	-	-	50,000	-	50,000	
市 출연	100,000	50,000	-	-	-	25,000	-	25,000	
道 출연	100,000	50,000	-	-	-	25,000	-	25,000	

○ 지원실적 : 53건, 1,980,000천원 보증 ➡ 보증 한도의 99% 소진 (19년~25.8월말)

- 관내 콘텐츠산업 기업 지원현황

구 분	합계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악	게임	광고	캐릭터	솔루션
지원기업	53	5	1	-	11	5	-	-	27	-	4

○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협약)
기관별 역할	· 경기도 :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재단에 특별 출연(출연비율 50%) · 시·군 :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재단에 특별 출연(출연비율 50%) · 경기신용보증재단 : 특례보증 홍보, 특례보증 지원 · 경기콘텐츠진흥원 : 평가위원회 구성, 콘텐츠 기업 자문 정보 제공,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규모	- 도와 시군이 출연한 출연금의 10배
출연방식	- 先 출연(일시 지급) 後 기업 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보증기간 5년)
지원절차	- 1억원 이하 : 상담→서류접수→보증심사→보증서 발급 - 1억원 이상 : 상담→서류접수→평가위원회→보증심사→보증서 발급
참여시군 (25개)	-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연천,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콘텐츠산업 분야	-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악, 게임, 광고, 캐릭터, 솔루션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출연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2026년도 출연금은 25,000천원이며, 특례보증 규모는 경기도와 우리시 출연액 합계의 10배인 500,000 천원임. 본 출연을 통해 관내 콘텐츠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절차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824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열린(이동)도서관 위탁 운영 기간이 2025.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 및 시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도시 외곽지역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열린(이동)도서관 운영을 (사)남양주시새마을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 내용

○ 열린(이동)도서관 업무 전반

- 열린(이동)도서관 인력 채용 및 관리
- 장서 관리, 회원 관리, 도서 대출 및 반납, 미납도서 관리

- 차량 및 업무용 기기 관리
- 기타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사업

(2) 위탁 개요

- 차 량 : 대형 버스 1대
- 인 력 : 4명 (기사 1명, 운영요원 3명)
- 서 고 : 면적 33㎡ (장서 48,866권)
- 운영조정 사항
 - 차량 노후화에 따른 운영 차량 1대로 변경

구 분	현재	조정
차 량	2대	1대
인 력	6명 (기사2, 운영요원4)	4명 (기사1, 운영요원3)
운영지역	63개소	44개소
운영예산	358,252천원	218,713천원

(3) 민간위탁 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간)

(4) 수탁기관 선정방식

- 선정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 (사)남양주시새마을회

(5)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218,713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민간이전 위탁금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합 계	인건비	도서구입비	운영비
218,713	159,256	30,000	29,457

(6)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이동도서관은 지속성과 접근성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전용 인력 배치로 장기적인 운영체계 구축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선정을 위해 열린(이동)도서관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 강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문화소외지역 및 정보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열린(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지속적인 독서환경 제공 가능
경제적 효율성	○ 디지털 격차와 물리적 거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계층 및 지역에서는 열린(이동)도서관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임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경험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소통자 역할 수행 및 책을 통해 삶을 잇고, 문화를 나누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문화 거점 역할 수행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운영평가 및 매년 지도·점검을 통한 성과 측정 가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방자치법 제 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2항,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19조(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관리·운영 철저 ○ 운영비 정산보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민간 위탁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및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총 합 의 견	○ 지역 간, 계층 간 독서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열린(이동)도서관 운영으로 단순한 책 대출 서비스를 넘어 정보 불평등 해소와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 도서관 방문이 쉽지 않은 시민에게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으로 독서와 삶을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의 역할 수행을 통한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민간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7) 자체 성과평가 결과 및 지도·감독 결과(적정)

○ 법적근거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성과평가) 및 제17조(지도·감독)

○ 평가등급

등급	A	B	C	D	E	F
점수	100~91	90~81	80~71	70~61	60~51	50이하

○ 평가결과

평가항목		비율	배점	점수
계		100%	100	92
1. 이동도서관 운영		50%	50	42
1-1	운영인력의 전문성	50	10	4
1-2	도서대출 실적		10	10
1-3	대출도서 미반납자 관리		10	10
1-4	도서 확보		10	10
1-5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		10	8
2. 이동도서관 관리		30%	30	30
2-1	도서보관 및 관리	30	15	15
2-2	개인정보 처리 적정		5	5
2-3	차량등 장비(물품)관리		10	10
3. 이동도서관 홍보		10%	10	10
3-1	주민서비스 및 이동도서관 홍보 실적	10	10	10
4. 기관 협조		10%	10	10
4-1	서류 제출 등 기관협조	10	5	5
4-2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 여부		5	5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

열린(이동)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기존 위탁운영 기간이 2025.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 및 시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사)남양주시새마을회와의 재계약 추진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의탁의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열린(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남양주시새마을회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차량 2대로 63개소를 운영하던 상황에서 차량 1대의 노후화로 인해 44개소로 축소하여 운영하게 되었을 때, 기존 열린(이동)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통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도시 외곽지역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 안 번 호	825
------------	-----

2025. 10. 2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14.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10.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복지재단 사무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2) 공유재산 현황 및 (면제) 사용료 산출

재산종류	건물명(소재지)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면적
행정재산	다산행정복지센터 [다산중앙로 7(다산동)]	남양주복지재단	복지재단 사무실	234.2㎡ (1층 일부)

○ (면제) 사용료 산출

- 재산평가액(2,676,334,334원) × 사용료 요율(2.5%) = 66,908,350원 / 연간

○ 허가기간

- 2025. 12. 15. ~ 2030. 12. 14. (5년) / 사용료 면제

(3)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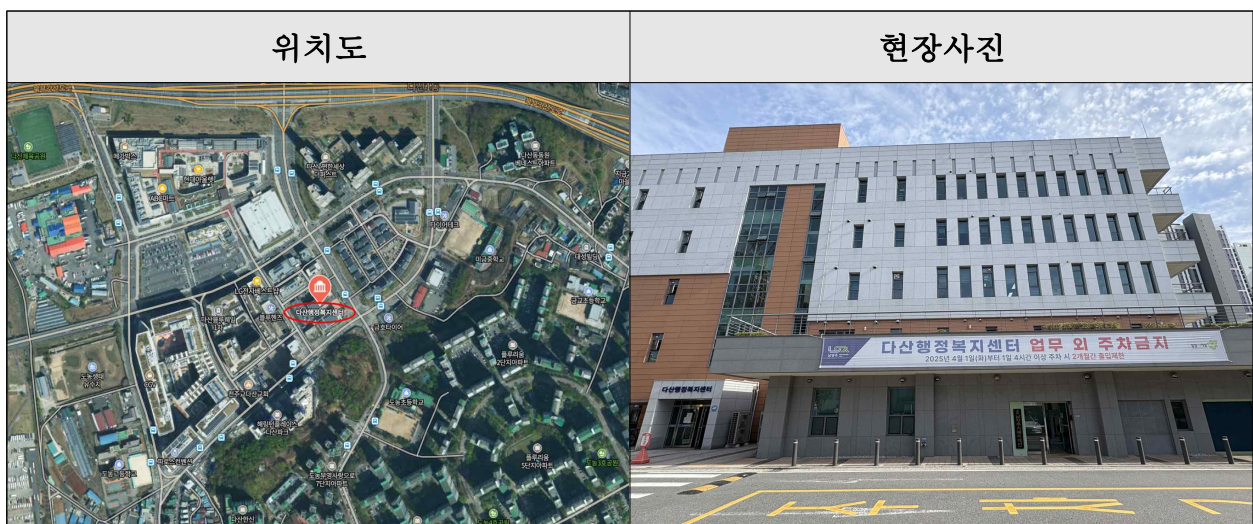
○ 2020. 12. : 남양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허가(2020. 12. 15.~2025. 12. 14.)

○ 2025. 10. : 제315회 임시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출

○ 2025. 10. : 2025년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 2025. 11. : 남양주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산관리관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동의안은 다산행정복지센터 1층 일부를 남양주복지재단 사무실로 사용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남양주복지재단은 남양주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시민 중심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및 남양주형 사회복지 모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상 면제요건이 충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